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

2005. 5. 1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4월 26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15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5. 5. 10)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김 명 식)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7(2004.1.30)호로 구역지정된 세운상가4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국제지명현상설계 등으로 건축계획 등의 변경이 있어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 정비면적 : 33,258.8㎡(대지 : 26,216.6㎡, 정비기반시설 : 7,042.2㎡)
- 도시계획사항 :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2종미관지구

다. 입안내용

- 세운상가4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세운상가4도시환경 정비구역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3,190.1	
변경	세운상가4도시환경 정비구역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3,258.8	측량 및 구역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증 68.7㎡)

2) 건축계획(변경)

구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지상/지하)	높이 (m)	주용도	비고
기정	26,129.1	15,677.5 이하	188,913 이하 (지하층 면적별도)	60 이하	723 이하	25/-	90 이하	업무시설 공공주거 판매시설 영업주거 숙박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변경	26,216.6	15,662 이하	325,062 이하	60 이하	750 이하	29/6 이하	114.5 이하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영업주거 숙박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국제현상설계 및 측량에 따른 변경

※연면적 지상층196,592.8㎡, 지하층 128,468.8㎡

3)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규모(변경)

① 공공공지

구분	사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공공지	종로구 예지동 149-1	7,061.0	감7,061.00	-	
변경	공공공지1	종로구 예지동 92번지일대	-	증 4,672.58	4,672.58	- 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공공공지2	종로구 예지동 133번지일대	-	증 2,022.99	2,022.99	- 도로신설에 따른 면적 및 위치변경 - 감 365.43㎡

② 도 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종로	2	1	16	집산 도로	20	종로구 예지동136-1	종로구 예지동132	A=346.63㎡

4)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① 도 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2	62	27-30	-	1,400	종로4가 (광로7)	충무로4가	
변경	대로	2	62	27-30	-	1,227	장사동156-5	충무로4가	세운상가4도시환경정비구역에 저촉되는 도로 폐지 - 종로4가(광로7)-장사동 156-47 - L=173m

② 광 장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종로4가광장	광장	종로구 예지동 149-1	13,300	감1,039.2	12,260.8	세운상가4도시환경정비구역에 지족되는 광장 폐지

3.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 략

4. 意 見 採 擇 : 의 건 없 음

5.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

2005. 5. 1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4월 27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15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5. 5. 10)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김 명 식)

가. 제안이유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비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심조성을 위하여 공평구역 제15, 16지구를 하나의 지구로변경과 동시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주용도(업무시설·판매및영업시설)를 변경코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